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0. 12. 9.(수) / 총 4매(본문2, 참고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과장 장순재, 사무관 양화승, 주무관 이상영 • ☎ (044) 201-3550, 3551	
보 도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 64개 시범현장(18.10~19.4) 거쳐 의무시행...재해복구 등 예외조항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

□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17)

○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지난 '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되었다.

*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

○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건진법 시행령, '20.12)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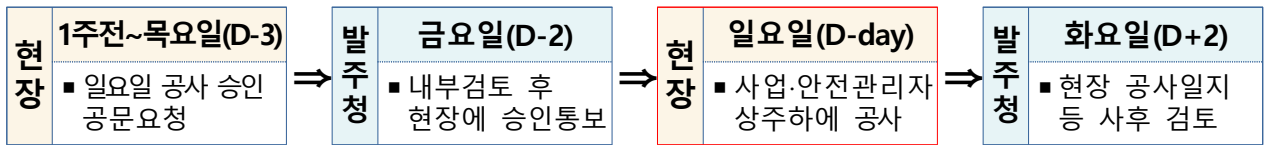
* (예외사유)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 송부

-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 사전승인 절차(안) >



< 긴급공사 사후승인 절차(안) >





* 각 발주청 별 여건에 따라 세부 승인절차 마련·시행(감리단 사전검토 후 승인요청 등)

-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 되길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 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적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양화승 사무관(☎ 044-201-35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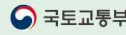
공공공사 현장

일요일 휴무제

2020.12.13(일)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건진법 제65조의2)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힘내라
대한민국



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휴일없이 진행중이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계해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승인)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후승인)



일요일 공사현장 안전관리



안전관리방안

승인 요청시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고, 발주청은 안전성 등을 종합·판단 후 승인



불시점검

일요일 공사현장을 불시 방문점검하거나, 화상전화 등을 활용해 사업·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여부 등 확인



□ 건진법 제65조의2 (일요일 공사 제한)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의2 (예외사유)

제 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